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고 제2022-1122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징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8월 25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문매각기관의 선정과 관련된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지방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상 예술품 등에 대한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사무 관련 조문 위치 이동 사항을 반영하여 ‘법 제71조의2’는 ‘법 제103조의 3’으로, ‘영 제74조의2’는 ‘영 제91조의11’로 개정하고자 함(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09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참조: 세무1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신내동)

(중랑구청 세무1과 전화 : 02-2094-1324, FAX : 490-4367)

※ 조례안 전문은 중랑구청 홈페이지/중랑소개/중랑소식/입법예고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jungnang.go.kr/>)